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47호 (2015년 6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진주 금형(뿌리)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 노력 - 개별공시지가 경남 7.91% 상승 -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5월 21일 시행 - 감사 통해 설계변경 원인규명 부실설계 방지대책 강구 -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비 307억원 확보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건의 -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점검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위반 전수조사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과제·주관기관 공모 -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29곳 적발 - 진주 금형(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4억원 투입화 	<p>■ 지식정보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면적 1년새 여의도 6배 증가 -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 정책 전환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 건축심의 제출도서 줄고 심의기간 단축 <p>■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0</p> <p>■ 신기술 정보 26</p> <p>■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28</p> <p>■ 기술인 나눔 정보 30</p>
--	--

경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 발전 위해 노력

▶ 5월 7일, 1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남도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개 건설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를 5월 7일 오전 11시 개최하였다.

경상남도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는 2013년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행정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날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2015년도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 장비·자재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 육성 전략 연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서일준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발전의 젖줄인 만큼,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 사용, 고용 창출, 건설관련 정보 교류 확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협의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각 기관의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3

개별공시지가 경남 7.91% 상승

- ▶ 전국 평균 4.63% 상승, 경남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 ▶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경남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63% 상승하였고, 경남은 7.91% 상승으로 세종 20.81%, 제주 12.46%, 울산 10.25%, 경북 8.05%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높다.

경남의 지가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의 95.17%인 369만 4천 필지 가격이 상승됐고, 8만 6천 필지(5.51%)는 보합, 10만 2천 필지(2.62%)는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인 구 진주극장 주변 상업용지로 지난해 보다 3.17% 하락한 3.3㎡당 19,661,4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통영시 옥지면 서산리 임야로 3.3㎡당 459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과 국도·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와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반값

5월 21일 시행

- ▶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 ▶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제’로 요율 내에서 협상으로 정해

경남도는 고가(高價)구간 중개보수를 반값 요율로 하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어지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었다.

예를 들어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 원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또 최대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에 맞추어 도는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고 시·군·구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배포하여 사무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하였다.

아울러, 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중개업소의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미부착시 과태료 30만 원)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당
(055)211-4573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가격 열람 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 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반영토록 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당
(055)211-4573

감사 통해 설계변경 원인규명하고 부실설계 방지대책 강구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경남도는 설계변경 주요원인은 물가상승(50%)과 민원해소(29%), 부실설계(13.6%), 기타(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과 관련 유형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공사는 12년간에 30회를 변경하였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많은 공사는 9년간 113억(당초 129억 87% 증가)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이 가장 많이 연장된 공사는 5년 계획이 13년 7개월로 연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인,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민원요구에 따른 변경, 부실설계에 있다고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 첫번째는 관급공사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와 국비예산 추가 확보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및 1억원 미만의 소액에 해당하는 공사 등은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부양과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예외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번째는 10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발주는 억제하는 한편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조기 마무리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시키고

세번째는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반을 구성·운영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설계참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여기술자 설계실명제 및 공사감독 설계변경 책임제를 실시하고, 도 인재개발원에 시설공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공사감독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등 부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발주처와 감리단, 시공사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5개 부패 취약분야(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업무, 민원 지도·감독 업무,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공사물량 산정을 중복하거나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와 토질조사 소홀로 암반선이 달라져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 용역 설계 시 일괄 하도급한 경우, 교량 기초 공사에 사용되는 파일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 등 14개 사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지적되어 과다 계상된 공사비 563백만 원은 감액조치, 부실시공 사업장은 재시공, 설계부실 용역사 책임기술자 4명은 부실벌점 조치하는 등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 조치하였다.

■ 자료 : 도 감사관실 기술감사팀당
(055)211-2273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비 307억 원 확보

▶ 산청 오부 방곡지구, 합천 용주 고품지구
용수원 개발

경남도는 지난 5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청군 오부면 방곡지구와 합천군 용주면 고품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015년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돼 국비 30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혜면적 50ha이상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경남도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농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사업 확보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써 산청군 오부면 방곡지구 155억 원, 합천군 용주면 고품지구 152억 원을 투입하여 172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습 가뭄과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해결과 함께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해 道 재정여건 개선은 물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농업정책과 농업용수팀당
(055)211-5253

경남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추진 "착착"

▶ 올해 453억 원 집중 투입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기 확충 기대

경남도는 올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453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도내 8곳 13.64km로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등 3곳 7.39km에 133억 원, 계속사업 구간으로 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등 2곳 2.05km에 257억 원, 신규사업 구간으로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등 3곳 4.2km에 63억 원이다.

특히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과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노선 조정(회전교차로, 노선연장) 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분양하여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계속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팀당
(055)211-435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건의

▶ 부담금 미수납, 과오납 감소로 지방 건전재정 기여 기대

경남도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부과시기 조정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과시기 조정안은 현행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사업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광역시) 인접 시·군에서 주택건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현재 부담금은 부산·울산권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에서 부과되고 있다.

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 등이 해당 사업기간 등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납기 내 징수가 어렵고 납기 후에도 사업준공까지 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준공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사업내용이나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현행법상 부담금 체납 시 1회 가산금만 부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미납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부과된 부담금이 미납되어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사업준공 전에 납부하더라도 최종사업 변경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어 실제 수납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자료 : 도 한방향노회산업과 행복생활권담당
(055)211-6533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상황 일제 점검

경남도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단지에 대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 동안 2개반 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진상황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세대내부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는 창원시 개나리 3차아파트, 통영시 도천아파트 및 미수 아파트 3개 단지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 목적은 지난해 국비지원을 받은 2개 단지(창원 개나리3차, 통영 도천)의 주요사업인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외벽 도장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후 부진사유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부진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4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위반 전수 조사

▶ 지속적인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으로 내실화 기여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세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실·부적격 운영에 대하여 29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도내 448개 업체(2015. 5월 기준)의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미달과 변경신고 지연 등 주택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주택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 제출 또는 청문절차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을 추진한다.

또 앞서 처분이 완료된 업체도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지난해 위반업체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22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 및 변경신고 지연으로 경고, 113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2차) 및 등록기준 미달, 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18개 업체는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되었다.

도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지도·감독으로 지역업체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서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과제·주관기관 공모

- ▶ 6월 29일까지 R&D사업, 기반조성사업 주관 기관 공모
- ▶ R&D사업 경남소재 기업 1개 이상 참여 컨소시엄 구성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에서 금년부터 추진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지난 5월 29일 공고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 3개 과제 및 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선정하게 된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83억 원(국비 818, 지방비 185, 민자280)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과제로 올해는 기술개발사업에 60억 원(국비 45억, 민자 15억), 테스트플랜트 건립과 장비를 구축하는 기반구축사업에 41억 원(국비3, 지방비38)이 지원된다.

전국공모 형식으로 진행되는 R&D사업은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되며, 반드시 경남 도내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도내 로봇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구축사업은 테스트플랜트 건립, 공정연구 등을 추진할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로 연구기관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 로봇산업담당
(055)211-2774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29곳 적발

- ▶ 전문인력, 임원 변경 지연신고,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과태료·등록취소 예정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 변경 신고 지연 4곳을 적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신청 지연 신고 4곳, 전문인력 부족, 사무실 미 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을 적발하였으며, 4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과 토지 3천㎡ 이상 개발 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055)211-4574

진주 금형(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속도 낸다

- ▶ 고용인원 4천 6백여 명, 연간 총생산액 5천 3백억 원 기대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경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진주 금형(뿌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조건부 가결’ 됨에 따라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형(뿌리)일반산업단지는 홍준표 도지사 민선6기 공약사업인 뿌리기술지원센터의 배후 산업단지로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예상리 일원에 제3섹터방식(진주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1,814억 원을 투자하여 964,650㎡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생산활동 효율성 제고, 업종간 집단화 및 연계화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51만 7814㎡), ▲생산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이용인구의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7만 4857㎡), ▲이주자 택지를 위한 주거시설용지(1만 3608㎡),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35만 8371㎡)로 구분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금형·소성가공·열처리 뿌리산업의 허브산단으로 도내 주력산업 고도화의 주도적인 역할과 항공·조선·자동차 등 연관기업 유치를 집적화함으로써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팀당 (055)211-434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04억 원 투입

- ▶ 17개 시군 도시계획도로사업 6.57km 정비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경남도는 마산 오동동 상가거리 뒤 도로계획도 정비 등 17개 도시계획도로 L=6.57km 정비하는데 104억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비를 전액 교부하고 전 구간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지구 선정 시 시군에서 1차 선정된 대상지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 사업 효과가 큰 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인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올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당 (055)211-4333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

▶ 외국인 소유토지가 여의도 43배, 우리나라 땅크기 지적통계로 한 눈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15년 지적통계연보(2014.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km² 증가한 100,284km² ('14.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km²

* 독도 면적: 0.18km²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4.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17km²)에 비해 여의도의 230배인 667km² 증가한 수준

- 주요 증가사유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km²,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km²,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다. <붙임1> 참조

□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29km², 강원 16,826km², 전남 12,309km²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km², 광주 501km², 대전 539km² 순으로 면적이 작다.

-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km², 강원 인제군 1,645km², 경북 안동시 1,522km²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km², 대구 중구 7.1km², 인천 동구 7.2km² 순으로 면적이 작다.

○ 지목별 토지면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47km² 감소하고, 대(埤)와 공장용지는 106km²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75km² 증가

-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81km² (63.9%)이며, 농경지는 20,402km² (20.34%)이며, 대(埤)와 공장용지는 3,826km² (3.82%)이다.

*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96km² (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남이 3,341km² (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埤)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19km² (18.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 개인소유토지 52,186km² (52%), 국·공유지 32,661km² (33%), 법인 및 비법인 15,105km² (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24km² (0.12%)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508km² (20.1%)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강원도가 10,110km² (31.0%)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4km² (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도가 30km² (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자료 : 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3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 ▶ 30만m²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 ▶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 ▶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하였으나,

○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km²)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1.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① 해제 절차 간소화

○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m²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² 이하가 26건(57%)

○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②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m²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m²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이번 조치로 70만m2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m2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m2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m2)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m2

② 시설 허용기준 완화

○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된다.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차등화 완화>

구 분	주택·근생	부설주차장
GB전 거주자	300m2	가능
5년이상	232m2	가능
일반	200m2	불가

⇒

구 분	주택·근생	부설주차장
GB전 거주자	300m2	가능
일반	232m2	가능

○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③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원 투입, 22.3km²을 매입하여 관리 중, 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4.9)이 국무회의(5.1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 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건축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12시)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 건축은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산업으로 국내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13년)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5% (216조) / 그 중 건축이 60% (130조)

○ 또한, 최근 건축시장의 정체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급감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전통적인 설계·시공 등 기존 건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하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단체·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산·학·연과 공공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활성화포럼에서는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 이를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가 경제정책 관련 주요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이번 활성화포럼은 국건위의 주도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축과 관련한 모든 분야(설계, ENG, 시공, 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02)397-5506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도시 품격 높이는 공공건축 선도 사례 찾아오

□ 우수 공공건축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발굴하여 격려하는 '제9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모한다.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모범적 공공건축이 국가의 건축·도시 문화 수준을 견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는다.

□ 본 공모에서는 공공건축물 및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에 공헌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무총리상(1점), 장관상(3점) 및 건축도시연구소장상(5점 내외)을 수여한다.

○ 공모 참여 시 응모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 개인 모두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특히, 해당 사업에 복수(複數)의 기관·부서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응모하는 기관 또는 부서가 원하는 경우 단일 응모 건에 대해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모 참가신청은 5.15일부터 6.30일 까지 공문접수 등을 통해 진행된다.

○ 오는 7~8월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수상자 발표 및 10월 중 시상식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설치 가능

▶ 9월 시행...공원의 안전성 확보 기대

□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5.21~6.30, 40일간)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설치

-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② 완충녹지 최소폭을 5m로 조정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완충녹지 최소폭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의 최소폭(5m)과 일치시켜 기준을 조정하였다.

③ 보훈회관 허용

-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산증축 규제 완화

▶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규제기요틴 과제('14.12.28), '15년 업무계획('15.1.28)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5.28.~'15.6.12)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 규제기요틴·업무계획: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시설의 세부업종·유해도를 재검토하여,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제한을 개선

○ 그동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등, '15.3~)을 통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 화학제품제조시설(비고체성), 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시설(폐유기용제류 발생), 가죽 및 모피시설(화학약품 사용), 섬유제조시설

-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②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입지 완화

○ 현재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하지만,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이 경우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기반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등 포함)

③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공장 입지 완화

○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 예를 들어, 가루상태의 재료나 고체형 반제품 등을 단순 혼합하여 분말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를 생산할 수 있지만, 비누나 화장품이 물에 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건설기술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다이어트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턴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 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 → 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 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건축심의 “제출도서는 줄고 심의기간은 단축”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 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을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다.

○ 또한, 소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결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를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특히, 계획심의를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 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고자 함.

* 근거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2. 주요 내용

- 발주청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 각 과업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 공사특성에 따른 사업별 분류(안 제3조 제6호~제9호)
 - 선형공사 :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
 - 비선형공사 I : 주택단지공사, 산업단지공사, 건축시설물공사
 - 비선형공사 II :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공사
 - 기타공사 : 선형공사, 비선형공사 I·II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소요인력 세부산정기준 마련(별표7 신설)
- 기타 자구·체계 수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 정비 이유

건설기술 분야 관련 고시 및 훈령 등 35개 기존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0개 행정규칙으로 통합·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된 행정규칙별 주요내용, 통폐합안 및 신규대조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의 통폐합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등 35개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등 10개 행정규칙으로 통폐합(전체 통폐합목록은 붙임 참고)

나. 행정규칙 체계의 정비

정의·적용범위 등 총론규정 정비, 조문이 많은 경우 편·장·절로 구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체계를 정비함

다.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의 필요 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기요틴 과제(2014. 12. 28)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본문)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천연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 천연염색물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택지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에 필요한 택지의 전매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였음.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방식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에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조의3 제8의2호) 및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전매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조의3 제10호) 추가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서는 경찰관서 중 파출소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지역경찰관서’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정의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는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도서·산간 오지·농어촌 벽지 등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파출소만 점용허가 내지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경찰관서로 확대하고, 최근 설치되어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대 설치규모를 감안하여 공원 및 공원주변의 효율적 치안활동을 위해 그 허용규모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중 규모가 430제곱미터 이하인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자체의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완화(별표 2)

도시공원으로서와 동일하게 지역경찰관서를 4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규모가 4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함

신기술 정보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신세계건설(주)
	(주)삼환까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정번호 : 제 764 호
- 명 칭 :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
-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PC
- 내용요약 :

(1) 범위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의 외곽부 둘레에 형성된 절반 폭의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와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슬래브 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단변방향 철근이 접합부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역티형 보와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시공후 연속화되는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형성된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및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내부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배치된 슬래브(WAS; WAffle shape Slab) 공법으로,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슬래브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단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고 운반과

탈형 및 적재 등 작업시 변형과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솟음을 억제하며, 슬래브 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부의 단변방향 갈고리철근 배근으로 덧침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키고, 보와 슬래브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체화되어 보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마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화가 가능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WAS 슬래브 공장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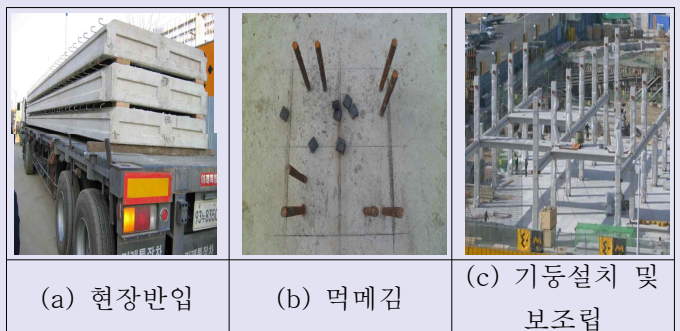


(a) 철근배근

(b) 강선 설치 및 인장

(c) WAS 슬래브 완성

② 기둥 및 보 시공



(a) 현장반입

(b) 먹메김

(c) 기둥설치 및 보조립

③ WAS 공법: 슬래브 시공



(a) 슬래브 거치

(b) 철근배근

(c) 덧침 콘크리트 타설

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동아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주)한화건설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65호
- 명 칭 : 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흙.물막이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축지하구조물 역타시공과정에서 굴착단계별로 병행 시공되어 가설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지하 각종 슬래브와 굴착공사 완료 후 최하층으로부터 상부로 시공되는 외주부 옹벽과의 교차부에 설치되어 옹벽 구조체 시공시까지 가설 흙막이의 토압을 지하 각종 슬래브에 전달하는 접합부 기술이다. 접합부는 철판과 콘크리트 합성 복합띠장과 개방형 Filler로 구성되어 외주부 옹벽의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 가설 흙막이 지지체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옹벽 구조물의 수직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밀성을 높일 수 있다.

○ 신기술의 범위

토압 전달을 위하여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지하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건축옹벽을 순차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015년 제5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일 시 : 2015. 6. 19(금), 14:00~17:00
- 장 소 :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 약 50명 정도(심의위원 15명 발주청 등 약 35명)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제9조(회의),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제11조(사전심의)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1건

의안 번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05-01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가례면 가례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6.70km(축제 및 호안공 등) · 사 업 비 : 128억 원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의령군 (안전관리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2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05-02	창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SOQ+PQ) (용역비 : 27억 원)	창원시 (환경위생과)
2015-05-03	밀양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7억 원)	밀양시 (상하수도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5월	계	65	62,615	59,455	3,161	5.05%	
	공사	토목	22	39,280	37,386	1,894	4.82%
		건축	3	2,595	2,475	120	4.62%
		기타	16	13,101	12,396	705	5.38%
	용역	12	6,828	6,452	377	5.52%	
	물품	12	811	746	65	8.01%	

■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8

나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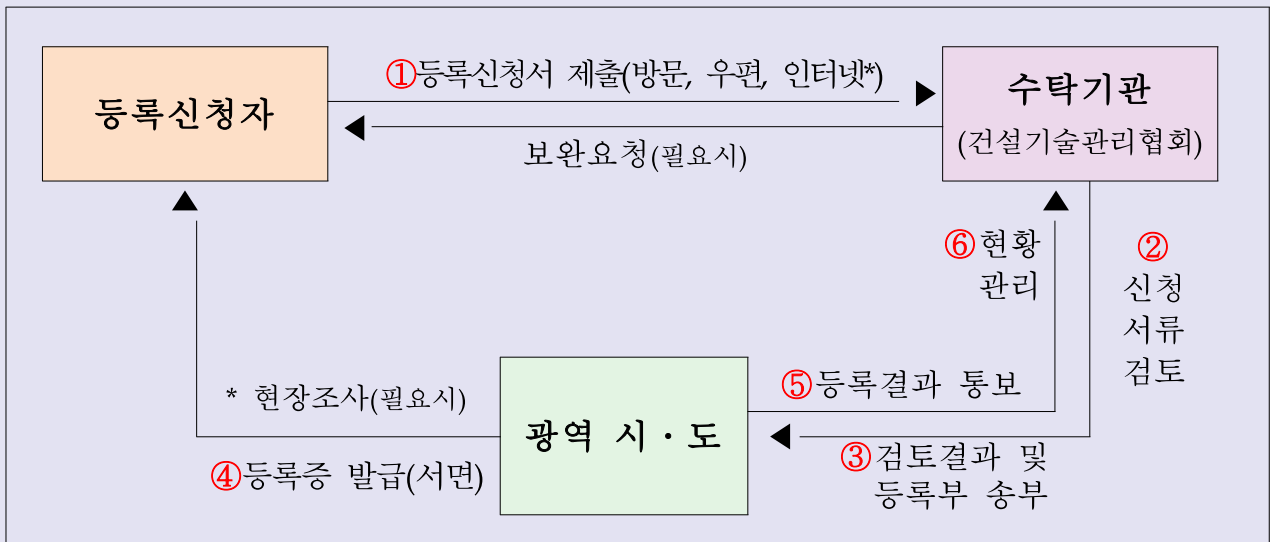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 ~ 1.16	2.1	3.27	3.30 ~ 4.8	4.25 ~ 5.4	5.22
					3.30 ~ 4.2		
	제106회	4.10 ~ 4.16	5.10	6.19	6.22 ~ 7.1	7.25 ~ 8.3	8.21
					6.22 ~ 6.25		
	제107회	7.3 ~ 7.9	8.1	9.18	9.21 ~ 10.02	10.17 ~ 10.26	11.13
					9.21 ~ 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 ~ 2.5	3.8	3.20	3.23 ~ 4.1	4.18 ~ 5.1	5.8
	제2회	4.24 ~ 4.30	5.31	6.12	6.15 ~ 6.24	7.11 ~ 7.24	7.31
	제3회	7.24 ~ 7.30	8.16	8.28	8.31 ~ 9.9	10.3 ~ 10.16	10.23
	제4회	8.21 ~ 8.27	9.19	10.8	10.12 ~ 10.21	11.7 ~ 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ccs0673@korea.kr(담당자 최춘수)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